
한국 대외원조(ODA) 정책현황 및 과제

- EDCF 프로젝트 심사를 중심으로 -

2012. 4. 20.

홍 남 기

순서

[A. 한국 ODA 정책현황 및 과제]		[B. EDCF 프로젝트 분석 및 평가]	
I. ODA 개요	/ 4	I. EDCF 개요	/ 28
II. 한국 ODA 구조 및 추진체계	/ 7	II. EDCF 지원 현황	/ 30
III. 한국 ODA 현주소	/ 14	III. EDCF 프로젝트 분석틀	/ 32
IV. 한국 ODA 선진화 및 정책과제	/ 19	IV. 프로젝트 F/S 검토사례	/ 35
		* 필리핀 남북부 연결철도 2차사업	
V. ODA 관련 최근 국제 논의	/ 25	V. EDCF 지원 효율화 방향	/ 37

A. 한국 ODA 정책현황 및 과제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 한 국가가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 (공여주체)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
 - (공여목적)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 주목적
 - * 군사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에서 제외
 - (양허성) 무상 또는 증여율(GE, Grant Element)* 25% 이상 (CL과 비교는 참고1)
 - * 증여율(GE)= 차관 액면가액- 원리금 상환액 현가($r=10\%$) / 차관액면가액 $\times 100(\%)$

2. ODA 구조

- 양자원조(Bilateral Aid) 공여국과 수원국의 직접거래
 - (무상원조)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상환조건 없이 무상 지원
 - (유상원조) 원조차관(Development Loan), 혼합신용, MDB 협조 융자 등의 형태로 장기 저리
- 다자원조(multilateral Aid) 국제기구(UN, WB등)가 공여국으로부터 모은 출연금·출자금 통해 수원국에 원조자금 및 물자를 간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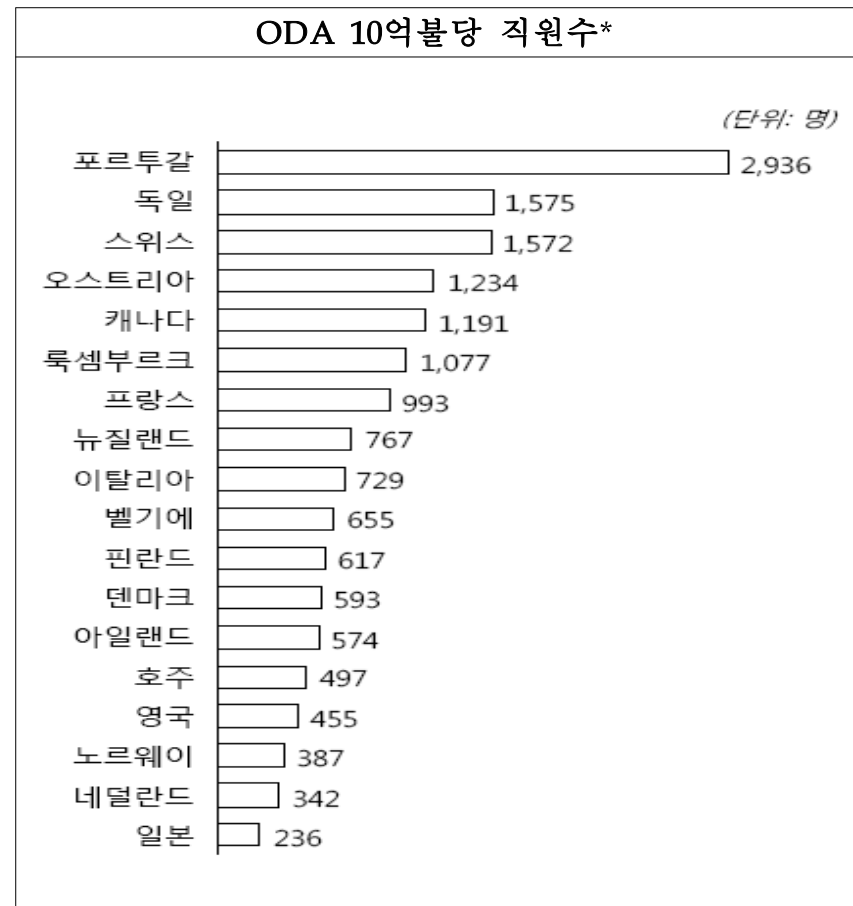
3. '11년 ODA 지원규모 (OECD DAC 회원국 중심)

□ '11년 OECD/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355억불(전년대비 2.7% 감소)을 기록

- ODA 지원규모 기준 상위 5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順,
- UN 제시 ODA/GNI비율 목표치(0.7%) 초과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OECD	국가	ODA/GNI('11 잠정)		ODA 규모('11 잠정)	
		순위	(%)	순위	백만불
	스웨덴	1	1.02	7	5,606
	노르웨이	2	1.00	9	4,936
	룩셈부르크	3	0.99	24	413
	덴마크	4	0.86	14	2,981
	네덜란드	5	0.75	6	6,324
	영국	6	0.56	3	13,739
	벨기에	7	0.53	15	2,800
	핀란드	8	0.52	16	1,409
	아일랜드	9	0.52	20	904
	프랑스	10	0.46	4	12,994
	스위스	11	0.46	13	3,086
	독일	12	0.40	2	14,533
	호주	13	0.35	10	4,799
	캐나다	14	0.31	8	5,291
	포르투갈	15	0.29	21	669
	스페인	15	0.29	11	4,264
	뉴질랜드	17	0.28	22	429
	오스트리아	18	0.27	19	1,107
	미국	20	0.20	1	30,745
	이태리	21	0.19	12	4,241
	일본	22	0.18	5	10,604
	한국	26	0.12	17	1,321
	그리스	28	0.11	25	331
	DAC 평균		0.31		5,805

DAC
회원
(23개국)



- OECD 가이드라인상 원조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 이는 미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가치(NPV)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 양허성 수준과 관련, 할인율이 일정한 경우, ① 이자율이 낮을수록, ② 원금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이 높아짐
 - 즉 원조조건에 어느 정도의 무상비율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상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100%이며 상업금융 또는 공적수출신용의 양허성수준은 “0(零)%”
 - CL을 계산하는 적용 할인율 (DDR)은 일반적으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R)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 (미달러화 등 대다수 통화는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CIRR를 결정하나, 한국 원화는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
- 이와는 달리 OECD DAC에서 ODA 정의를 위하여 증여요소(Grant Element)라는 개념 사용
 - GE 계산공식은 양허성 수준과 동일하나 다만 적용 할인율은 CIRR 대신 10% 고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

1. 한국 ODA 역사

□ 우리나라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는 사실상 WB 차관졸업 시기(1988)인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 한국 ODA/개발협력을 바라보는 시각

- 단기간내 압축성장/경제발전등 개발경험과 민주주의 이행
- 개도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모델(농업→산업화, 정보화등)
- 개도국과 정서적 유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2. 한국 ODA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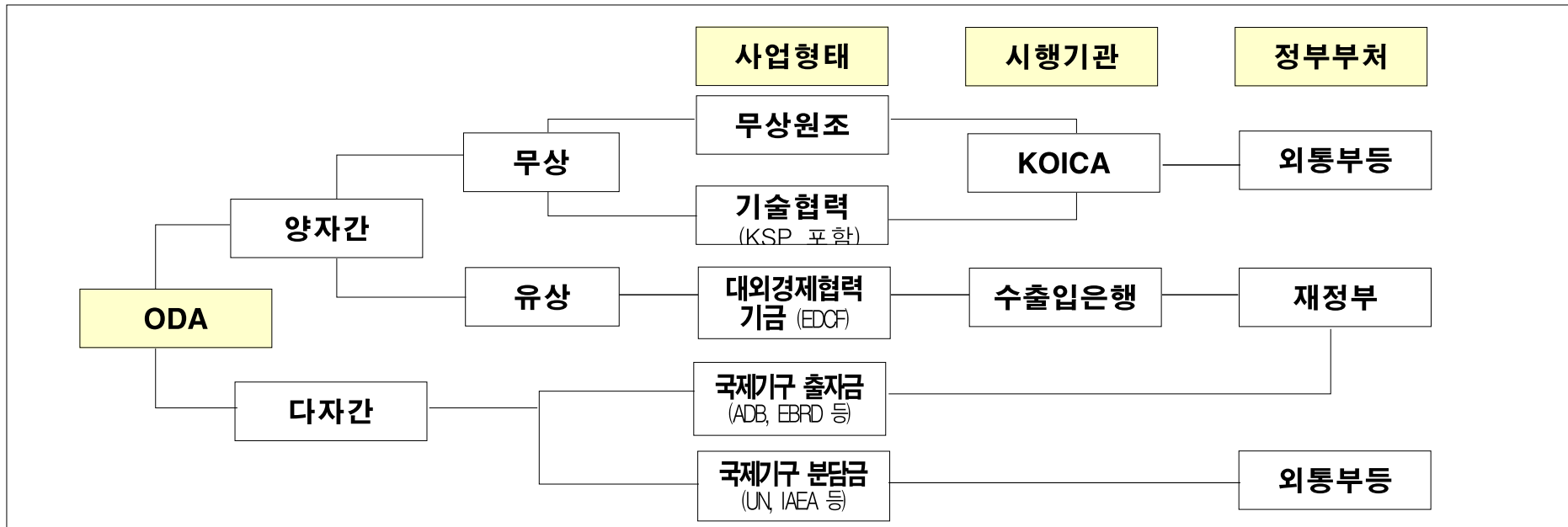
□ (양자원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개도국과 협의 등을 통해 직접 지원

- (유상) 도로 항만등 기간시설등 지원, 재정부·수출입은행(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담당
- (무상) 물자지원, 기술협력등, 외교부·KOICA(80%, 한국국제협력단법)와 각 부처(20%) 담당

* 주요사업: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재난구호, 물자지원 등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참조 2

□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WB, ADB등, 기획재정부), UN 등 일반국제기구(외교부) 등을 통해 간접 지원



참고 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사업은 ①정책자문, ②발전경험 모듈화, ③국제기구 공동컨설팅으로 구성

Ⅰ. KSP 정책자문사업

- ① (사업 개요)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
 - (추진 체계)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KDI 등에 정책자문사업을 위탁하여 운영

- ② (지원 현황) '04년 사업 개시 이래, 전략적 경협이 필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11년까지 34개국 300여개의 정책자문 실시
 - '09년 경제전반에 포괄컨설팅을 실시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 ('09년)1개국(베)→ ('10년)4개국(+인니, 캄보, 우즈벡)→ ('11년)7개국(+몽골, 가나, 페루) → ('12년)10개국

- ③ (향후 계획) 개도국 수요 증가 등에 부응하여 지원국을 지속 확대하고, 사업관리 및 내실화 병행
 - '12년 중 32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11년 26개국) -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벗어나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대상지역을 다변화하여 KSP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2.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 ① (사업 개요) 우리 발전경험을 구체적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정책자문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모듈화 계획 : ('10년)20개→ ('11년)40개→ ('12년)40개
 - 'ODA 선진화 방안('10.10)'의 주요과제로 '11년부터 재정부가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사업을 총괄
- ② (향후 계획) '12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듈화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노력 확대
 - 중간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국제기구 등과 모듈화 결과물을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계획

3. 국제기구(MDB)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 ① (사업 개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KSP 사업을 연계한 공동컨설팅을 실시하여 KSP 사업을 삼각협력 형태로 발전 / 자원 공동조달(co-financing) 및 국내 컨설턴트 파견 등 추진
- ② (추진 현황) 국제기구와 KSP MOU 체결 등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컨설팅 사업 발굴
 - * '11년 AfDB, IDB, ADB, EBRD, WB와 MOU 체결
- ③ (향후 계획) 국제기구별로 1~6개 내외의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5개 내외의 공동컨설팅 추진
 - * ('11년 추진사업) 한-태국 인프라 비교사업(ADB), 지속가능한 도시(IDB)

< 베트남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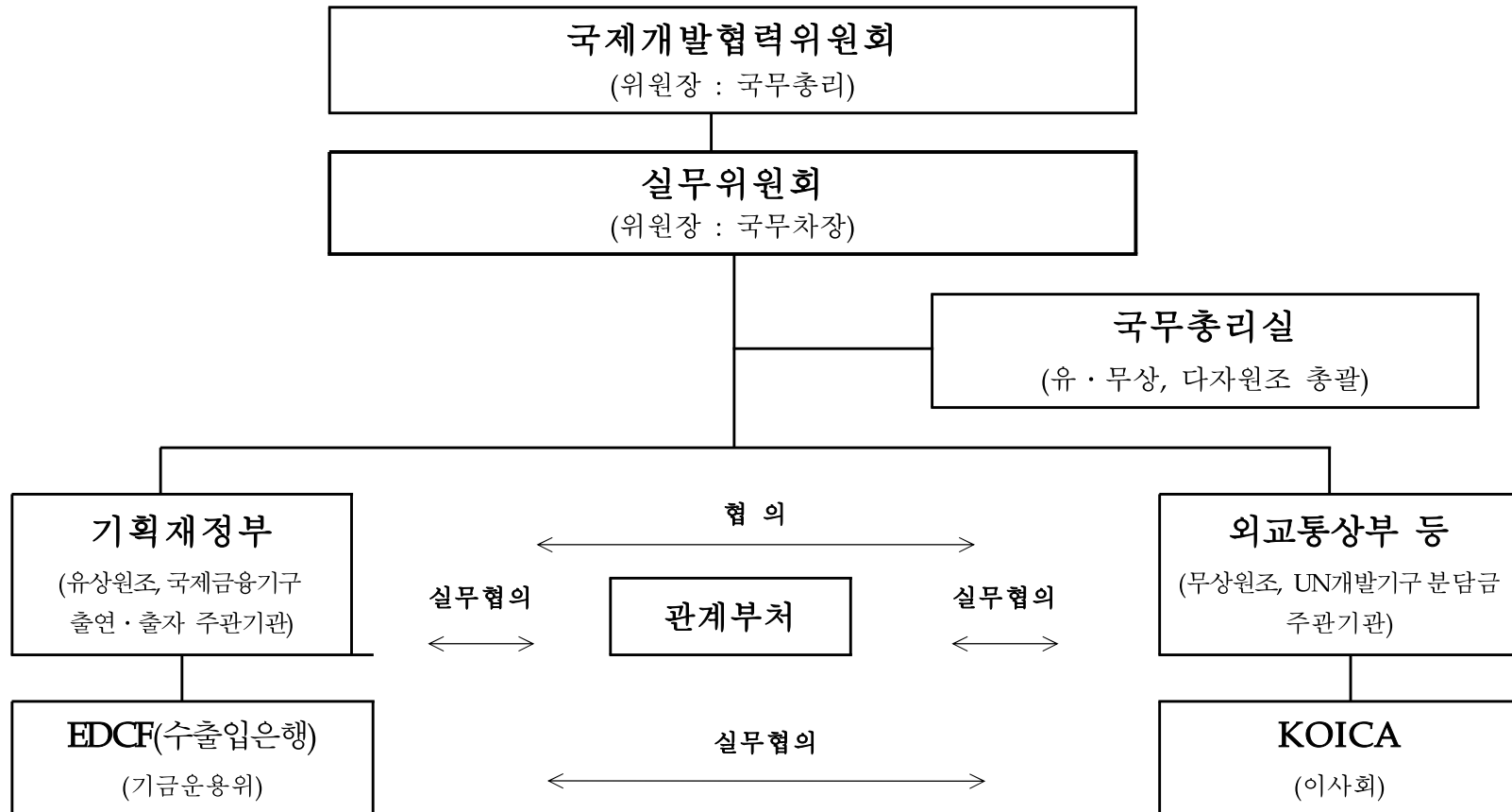
VIETNAM (2004): The Export Promotion Financial Policy and Export Credit Agency of Vietnam

- Providing policy research and consultation on the export promotion and a roadmap on establishing Export Credit Agency (ECA) in Vietnam
- Suggesting measures to operate the ECA and assisting an establishment of Vietnam Development Bank (VDB) as a ECA in Vietnam




3. 한국 ODA 추진체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09.12월) 제정으로 통합 ODA 추진체계 마련



참고 3

유무상 원조 연계 및 역할

구분	양허성 차관	무상원조	
(대상국가)	저소득국 이상 집중 (다만, 최빈국에 인프라구축 수요가 있는 경우 외채상황을 감안하여 선별지원)	최빈국, 저소득국 중심 	
(지원규모)	주로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지원분야)	교통, 수자원, 통신, 에너지, 대학병원, 2~3차 교육 등 경제·사회인프라 부문에 집중	교육, 보건, 의료, 농업, 행정, 환경보호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중	
(지원방식)	고정자본형성을 위한 프로젝트(EDCF자금협력) 중심	인적자본 형성과 개발역량확충을 위한 기술협력 중심	
(사업단계별 연계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10px;">국별지원전략(CPS)에 근거한 유무상 사전 역할분담</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개발계획 수립</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실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유지·보수</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KSP/무상원조</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양허성 차관 무상원조</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무상원조 중심</div> </div>		

1. 한국 ODA 지원 현황

- 한국 ODA는 '87년 EDCF · '91년 KOICA 출범, '10년 기본법제정 등으로 '87년 0.2억불에서 '11년 13.2억불로 65배 증가('11년 ODA/GNI 비율 0.12%, DAC 23국 평균 0.31%)
 - '15년까지 ODA/GNI 비율을 현행대비 2배 수준인 0.25% 수준으로 제고,
 - ODA 구성비를 보면 양자원조(9.7억불)가 73%(유상: 31%(4.1억불), 무상: 42%(5.5억불), 다자원조(3.5억불)가 27%를 차지

* '02년까지는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보다 큰 비중이었으나, '03년 이후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대한 원조 확대등을 기점으로 무상원조가 약 70%, 유상원조가 약 30%로 유지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잠정)	
								증감액	
ODA 규모(백만불)	423.3	752.3	455.3	696.1	802.3	816.0	1,174	1,321	+147
양자간	330.8	463.3	376.1	490.5	539.2	581.1	901	970	+69
- 유상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327	412	+85
- 무상	212.1	318.0	259.0	358.3	368.7	367.0	574	558	-16
다자간	92.5	289.0	79.2	205.6	263.1	234.9	273	351	+78
GNI대비(%)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12%	-

○ (지역별) 아시아가 65.2%로 가장 높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지원(순지출 기준, '10년)

* 지역별 비중(% , '10년): 아시아(65.2), 아프리카(15.5), 중남미(7.2), 유럽(4.2), 대양주(0.6)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341.3	101.4	55.0	5.9	5.6	64.7	573.9
유상원조	246.0	38.5	9.4	32.9	0	-	326.8
합 계 (비중:%)	587.3 (65.2)	139.9 (15.5)	64.4 (7.2)	38.8 (4.3)	5.6 (0.6)	64.7 (7.2)	900.7 (100)

2.

□ 특히 최근 G20 서울정상회의 개최('10.11), 부산 원조최고위급포럼(HLF) 개최('11.11) 등을 계기로 원조분야에서 선후진국 가교역할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도 제고

○ G20 서울정상회의시 '개발의제'(Development issue)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 주도, "서울개발 컨센서스" 발표

○ 부산 세계개발원조 최고위급회의시 '원조' 중심 논의를 '개발'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등 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 "부산선언" 채택

☞ V장에서 추가 논의

※ '12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

● '12년 ODA 예산은 총 약 1조 8,600억원 내외

- 양자 대 다자는 7 : 3, 무상 대 유상은 53 : 47 내외

* (양자) 무상 7,100억원(53%), 유상 6,200억원(47%)

(다자) UN 및 기타 1,500억원(27%), 국제금융기구 4,000억원(73%)

● 지역별 : 아시아 중점 기조 하에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기타
규모(억원)	5,602(43%)	1,822(14%)	1,092(8%)	697(5%)	4,017(30%)

● 분야별 : 인도적 지원, NGO 지원을 확대

구 분	경제인프라	사회인프라	행정비용	인도적지원	NGO지원	생산	다부문	기타
규모(억원)	4,827(36%)	4,663(35%)	430(3%)	385(3%)	370(3%)	283(2%)	198(1%)	2,072(17%)

● 형태별 : 프로젝트 중점 지원하에 민관협력, 긴급구호를 확대

구 분	프로젝트	봉사단파견	초청연수	개발조사	민관협력	긴급구호	기타
규모(억원)	9,177(69%)	1,001(8%)	569(4%)	462(3%)	368(3%)	218(2%)	1,435(11%)

2. 한국 ODA 특성 및 문제점

□ OECD DAC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 ODA 특성

- 적은 원조규모와 낮은 GNI 대비 비율(09년) : 8.2억불(0.1%)
 - * ODA 규모는 DAC 회원국중 19위, GNI 대비 비율은 최하위
- 높은 유상비율(08년) : 우리나라(36.3%) vs DAC 회원국(12.6%)
 - * '08년 총지출 기준 DAC 회원국 중 3위(일본 47.2%, 포르투갈 37.5% 등)
- H/W 중심의 사업(08년) : 우리나라(18.9%) vs DAC 회원국(6.8%)
 - * H/W 사업 : 도로, 교량, 병원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 낮은 비구속성(Untied) 비율(08년) : 우리나라(35.8%) vs DAC 회원국(86.5%)
- 유무상 담당기관 분리 : 각각의 법적기반과 추진체계 보유
 - * 유상원조를 실시중인 8개 DAC 회원국중 유무상기관이 분리된 국가는 프랑스(시행기관은 통합), 이태리, 한국

□ 한국 ODA, 몇가지 문제점

- (분절화) 30여개 기관에서 1,000여개 사업을 분산적으로 지원 (유무상 분절화)
 - * 사례: 캄보디아 66개 사업이 연계없이 단편적으로 추진(10.10 평가결과)

○(사업중복) 유무상간, 무상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 사례: 베트남에서 유무상 담당기관이 각각 대형병원 건립을 동시에 진행

○(정보 미공유) 기관간 정책 및 사업정보가 단절되어 사업효과 제고에 한계

* 사례: 소관사업이 ODA에 해당되는 지 조차 알지 못하고 수행하는 기관도 상당수

○(실효성 저하) 개도국 수요와 현지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공급자 중심 지원

* 사례: 유희인력이 많고 기계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에 영농기계화사업 자문 등

□ 전반적인 평가 :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 유상과 무상이 상호 연계없이 ODA를 추진하여 사업 분절화와 중복 발생

○ 원조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전략이 미흡

○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흡, 전문인력 미확보, NGO·기업과의 연계 부족 등 추진 기반이 취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계기로 통합 추진체제 구축등 ODA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

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추진

- (선진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10.10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0.12월) 등 우리나라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 수립, 추진중
 - (지향점) ODA/GNI 비율을 '15년까지 0.25% 수준('11년 0.12%, 잠정)으로 확대
 - 양자·다자간 비율 : '15년까지 70:30 수준으로 유지('11년 73:27, 잠정)
 - 비구속성(Untied) 비율: '15년까지* 75%로 확대 ('11년 67.5%,잠정)
 - * 유상: '15년까지 100%, 무상: '15년까지 50% ('11년 35.8%)
 - (법적기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10.7월 시행)을 통해 대외원조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3대 선진화 전략 >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경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경험 정리 - 정책 제도 컨설팅 ● 사업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기술 - 프로젝트의 기술협력 ● 감성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동사례 발굴 공유 - 한국적 미와 정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기조 - 중점 협력국 ● 사업수행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발굴 및 선정 -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 평가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원조 전략 - 선진공여국 협력 ● 국제기구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 ODA 조달시장 참여 ● 국제규범 준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범 형성 참여 - 인도적 지원 강화

2. ODA 정책방향 및 과제

- ①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후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 마련

 - (개발경험)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우수한 정책·제도로써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 (경제개발계획, 수출진흥 정책, 경제위기 극복경험 등) ⇒ 정책 컨설팅에 활용
 -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정리
 - * 경제(재정부), 보건의료(복지부), 인적자원(교과·고용부), 행정·ICT (행안·법무·방통·지경부), 농어업(농식품·행안부), 국토건설(국토부), 산업에너지(지경부), 환경(환경부)

 - (사업기술)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업기술로서 개도국에 효과가 큰 ODA 사업목록(Inventory) (농산물 재배기술, 전자정부 시스템, 전력망 구축기술 등) ⇒ 프로젝트, 기술협력에 활용
 - 8대 분야를 포함하여, 쏠부처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발굴·정리

 - (감성분야) 특유의 한국적 감성 또는 美를 가미하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감동사례 ⇒ ODA 부가가치 제고에 활용
 - 문화부(한국적 감성과 미), KOICA/EDCF(감동사례)
- ☞ 개발경험 + 사업기술 + 감성분야 ⇨ 『표준 원조모델』 마련

②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 ①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 : 유무상을 통합한 지역별 정책기조 ⇨ 중점협력국 선정 ⇨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
- (지역별 정책기조) 유무상 통합 지역별 정책기조를 설정, 체계적 원조의 틀 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 (5년)에 따라 재검토)
 - 아시아 :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 유지 (양자원조 55%내외)
 - * 신아시아 외교구상('09.3),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7)
 - 아프리카 : 빈곤감축과 자립기반 확대에 중점 (양자원조 20%내외) 등
- (통합중점협력국) 유무상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 통합, 양자예산의 70%이상을 집중 (3년마다 재검토)
 - OECD DAC 수원국(152개국) 중 중하위소득국 이하 그룹에서 국제적인 기준, 원조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통합 CAS) 유·무상 기관별로 수립했던 국별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통합 작성하여 국가차원의 ODA 지원 기본지침으로 활용
 - '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의 개발계획 수립시기와 연계하여 통합 CAS 수립을 완료(3년 주기 보완)

② 사업수행의 선진화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방안 강구 (사업간 연계 : 유무상 연계, 정부/NGO·기업, 패키지형 연계)

□ (사업발굴 및 선정) 관계부처간 충분한 사업 검토후 선정

○ 전략사업 리스트 제도를 도입, 일정규모 이상 대형 사업은 전문연구기관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참고4)

□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 원조기관별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

○ 유상-무상 연계 : 연계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 ① 개발조사/KSP(무상) + 프로젝트(유상) ② 프로젝트(유상) + 사업운영(무상) ③ 지역내 인프라(유상) + 사회교육 시설(무상)
- ④ 역량강화사업(무상) + 인프라(유상)

○ 정부-민간(NGO/기업) 연계 : 연계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 ① 자금지원(정부) + 사업수행(NGO) ② 프로젝트(정부) + 운영(NGO) ③ 타당성 조사(정부) + 프로젝트(기업)
- ④ 차관(EDCF) + 출자(기업)

○ 패키지형 사업 : 중점분야의 목표 달성, 특정지역의 종합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 추진 (예시: 사업 타당성조사 + 원조사업의 연계(인프라 : 관개수로, 가공시설 + 기술전수 :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 기자재지원 : 농기계) + 사후관리 : 유지보수, 판로개척 등)

③ 통합평가시스템 도입

- 유무상별로 진행된 자체평가 방식의 평가시스템을 총리실 평가소위 중심의 유무상 통합평가 방식으로 개편, 객관성 확보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제도화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③ 국제활동 참여 강화

-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다자원조전략 수립·추진,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 및 원조분업, 우리 위상제고에 발맞추어 국제기구에서의 인력진출 확대, 개발협력 관련 국제원조 규범 이행 및 신규범형성과정에 적극 참여등

참고 4

대형 ODA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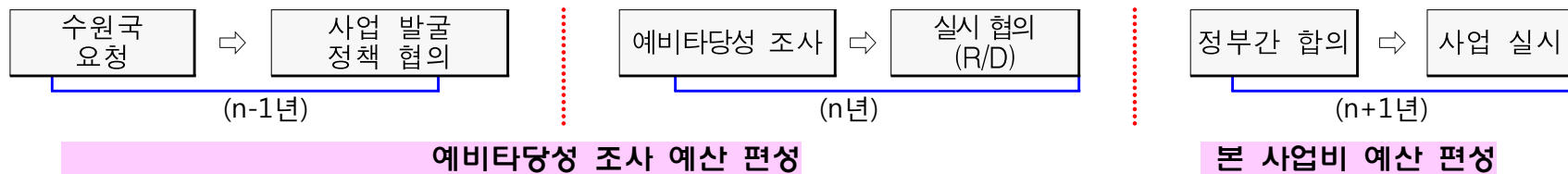
- (필요성) ODA 규모 확대에 따라 유·무상 ODA 사업의 객관적·중립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ODA 사업은 수원국의 여건·수요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흡한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야 효과성 확보가능

- (개념 및 기준) 사업 초기 단계에 대형 프로젝트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
 - ODA 실행기관이 추진하는 ODA사업에 대해 ODA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차원 등)
 - * 의사결정(추진, 보완후 추진, 중단) 및 다자협력·PPP 등 사업 방식에 활용

- **[추진방법]** 주관기관(재정부, 외교부)이 우선순위 등을 기재한 '예비타당성 목록'을 대상으로 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
 - * 실제 조사는 대외경제정책과 지역연구능력을 갖춘 전문연구기관(KIEP)이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중립적으로 실시하되, 총리실은 과정을 관리·감독

- (대상사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예시: 무상 100억원, 유상 1억불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결과보고) 타당성조사 결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
- (통보·활용) 조사 결과는 재정부(EDCF), 외교부(KOICA), 재정부 예산실에 통보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 사업선정·추진 시 반영

< 대형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



◇ ‘원조(Aid)’ 중심 논의를 ‘개발(Development)’로 확대하여 결과에 초점을 둔 개도국 맞춤형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세

① (최근 동향)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등장, 개발협력 주체 다변화 등의 환경 변화로 단순 원조 차원의 접근을 넘어 개도국의 “효과적 개발”(beyond aid) 맥락 논의**가 주류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식량안보(food security),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

** 파리선언 등 기존 논의가 주로 원조규모 확대(More Aid), 효과적 전달(Better Aid)에 초점을 뒀던 반면, 최근 논의는 개도국 종합 개발을 위해 원조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무역, 투자, 조세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중점

② (G20 개발의제) “개발”(beyond aid) 맥락의 새로운 논의는 작년 G20 개발의제*로 최초로 구체화

* 개도국을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 제공

○ 개도국의 자생적 경제성장(Growth)에 중점을 둔 ①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②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

* 서울 개발 컨센선스 : 6大 원칙 제시 ⇒ ① 경제성장 중심, ②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구축, ③ 민간참여 확대 ④ Global/Regional 이슈 대응, ⑤ 여타 개발논의 보완, ⑥ 성과 지향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 9개 분야(Pillar)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 제시 ⇒ ① 인프라 ② 인적자원 개발 ③ 무역 ④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⑤ 식량안보 ⑥ 성장복원력 ⑦ 금융소외계층 포용 ⑧ 국내재원 조달 ⑨ 개발경험 공유

- ③ (OECD 개발전략) OECD는 DAC 차원의 접근을 넘어 개발 논의를 OECD 전체로 주류화하기 위한 “OECD 개발전략(OECD strategy for development)”을 준비중
- ④ (HLF4: High level Forum in Aid Effectiveness) 작년 11월 국제사회 개발논의의 최고위급 회의인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 포럼(HLF-4)이 부산(Bexco)에서 개최
- (주요의제) 파리선언*(PD)의 이행결과 점검, 남남/민관협력 등 포괄적 개발협력 방안
 - * '05년 HLF-2(파리)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1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수치화하여 제시
 - 파리선언 이후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방향(Post-PD)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의미
 - (주요성과) 『부산선언』 채택, 개발협력 분야 새로운 이정표 마련
 -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개발주체의 상호 보완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바탕으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 (결과중심, 개발 효과성) ‘원조’ 중심 논의를 ‘개발’로 확대하여 결과에 초점을 둔 개도국 맞춤형 지원(개발 효과성 심화)으로 패러다임 전환
 - (주인의식 제고)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2015년까지 75% 이상 확대), 협력대상국 중심 사업추진 등
 - (투명성 및 상호 책임성) 공적자금 개발 활동에 관한 전체정보의 공개, 2013년까지 중장기 예측가능성 제고 등

B. EDCF 프로젝트 분석 및 평가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요

□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저리차관 ('87년 설치)

○ 지원대상 국가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 차별화

구분	대개도국 차관	구분	대개도국 차관
용자한도	· 총사업비용 범위내 * 다만, 최빈국이외의 국가에 대한 언타이드 차관은 85% 이내	상환·거치 기간	· 상환 40년 이내, 거치 15년 이내
		원금상환 방법 및 이자징수방법	· 원금: 연 2회 정기분할, 이자: 6개월 후취
이자율	· 연 0.01% ~ 2.5% * 다만, 한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서비스 소요자금은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	담보	· 차주가 중앙정부·중앙정부: 담보면제 · 차주가 지자체·법인: 중앙정부, 중앙은행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지급보증

※ 구속성(tied) 방식 지원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상업성이 있는 사업**(예: 도심지역의 통신, 전력, 제조업)은 지원 불가능
 - 상업성이 있는 사업: 사업의 현금흐름(통상 10년)으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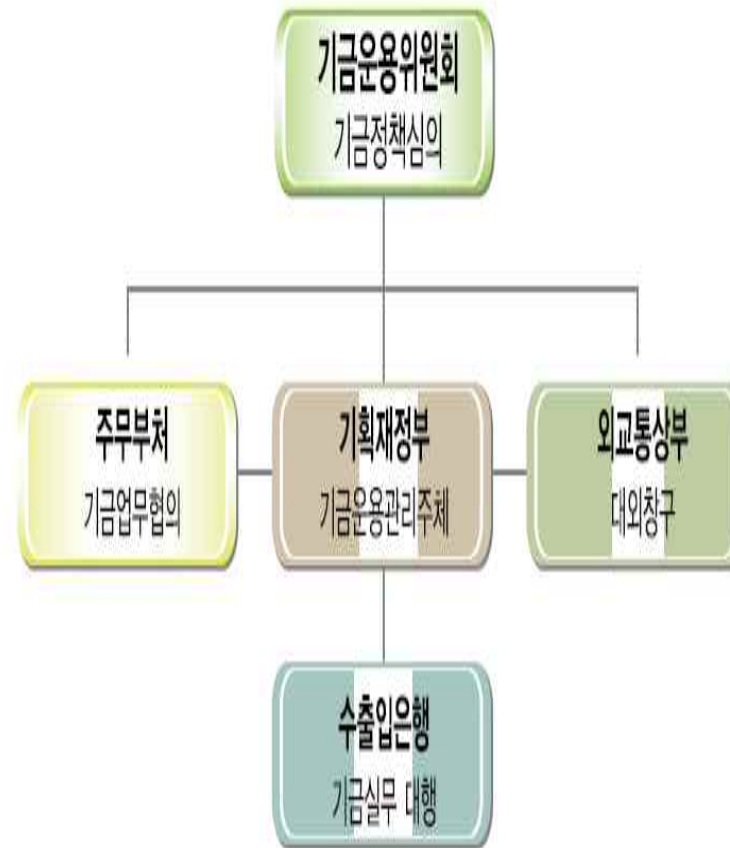
2. EDCF 추진체계

□ 기재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수출입은행(경제협력본부, 84명)은 위탁을 받아 EDCF 사업심사, 자금 집행 등을 담당 (참고 1)

참고 1

EDCF 운용조직 및 체계

<p>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p>	<p>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 포함 외교통상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 등 12명의 위원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p>
<p>기획재정부</p>	<p>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추진 업무 주관, 외교통상부·교육 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진행 등</p>
<p>외교통상부</p>	<p>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 수원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p>
<p>수출입은행</p>	<p>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응자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의 관리 등</p>



II

EDCF 지원 현황

① (기금조성) 2조 9,913억원 (총 차입액 3,050억원, 총 상환액 2,677억원)

(단위 : 억원)

구분	'87-'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7-'11년
정부출연금	7,799	1,500	1,700	1,600	1,200	1,500	3,500	18,799
공자예수금	1,773	△203	△203	△203	△203	△177	△410	373
이익잉여금	8,014	355	434	495	642	412	388	10,741
계	17,586	1,652	1,931	1,892	1,639	1,736	3,478	29,913

② (지원실적) 1987년 설립이후 '11.12월말까지 49개국 277개 프로젝트에 8.1조원 승인

(단위 : 억원)

구분	'87-'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승인	23,324	3,914	6,434	10,664	12,024	12,615	12,279	81,253
집행 (집행률)	14,818 (62.4%)	1,361 (52.3%)	1,553 (51.8%)	2,371 (67.8%)	3,128 (89.4%)	4,107 (87.4%)	5,097 (84.3%)	32,435 -

○ 지역별로는 아시아(64%), 분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 경제인프라(54%)와 보건 등 지원

* 주요 지원국(누적기준, 비중): 베트남(20.2%), 인도네시아(6.8%), 방글라데시(6.8%), 스리랑카(6.1%), 필리핀(5.4%) 등

** 주요 분야별(누적기준, 비중): 교통(34.8%), 수자원·위생(15.8%), 에너지(11.2%), 보건(10.3%), 교육(9.0%) 등

(단위 : 억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기타	계
51,923 (63.9%)	16,010 (19.7%)	4,334 (5.3%)	5,990 (7.4%)	2,816 (3.5%)	180 (0.2%)	81,253 (100%)

- ① (규모) 정부의 ODA 확대계획에 따라 신규 지원승인 1조 3,500억원 및 집행 6,152억원 추진
- ② (운용방향)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MDB와의 협조유자를 확대
 - * '12년 승인계획(잠정) : 중점협력국 70% 내외 / MDB 협조유자 15% 내외
 - 또한,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하여 개도국이 발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직·간접 지원 확대
 - * EDCF는 사업의 현금흐름을 보강하여 민간투자를 성사시키는 역할
- ③ (지역별 지원계획) 전략적 경험 필요성,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신흥국·자원부국 대상 신규 경험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동·중남미 지원 확대
 - * '12년 계획(승인 기준) : 아시아 67%, 아프리카 20%, 중남미 7%, 기타 6%
- ④ (분야별 지원계획) 5천만불 이상의 대형 경제 인프라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고 개도국의 성장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
 - * 우리나라의 최대지원규모는 2억불(베트남 밤콩 교량, '10.12월 승인)이나, 일본은 16억불(터키 보스포로스해협 횡단 지하철, '05.2월 승인)까지 지원
 - 또한, 글로벌 이슈 대응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개도국의 녹색성장 및 농업 분야를 최우선 지원 대상 분야로 선정

III

EDCF 프로젝트 분석틀 (타당성 조사(Feasible Study) 관련)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효과를 국가경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social benefit를 강조하는 경제성 분석과 사업시행 주체의 profit 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재무성 분석도 병행
- (자료수집) 비용은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시행 비용, 사업시행 후 운영단계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수집하고, 편익은 직접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 중심으로 수집

* 예시) 도로분야 공사(예시)

구분	항목	계량화 방법	화폐가치화 방법
비용	계획(설계비), 건설(건설비, 감리비), 운영(차량구입비, 운영비용)	원단위	원단위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원), 통행시간(시간)	운행비용, 시간의 화폐가치화

- (경제성 분석)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을 통해 사업실행전략 수립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
- 장래의 불확실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

1 (편익 · 비용 비율(Benefit/Cost: B/C)) : $B/C \geq 1$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 적용하는 자본의 기회비용(할인율)은 12%(WB 기준)를 적용
 다만, 수원국의 시장금리, 사업 분야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적용

$$\text{편익·비용비율}(B/C)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편익의 현재가치, C_t : 비용의 현재가치, r : 할인율(이자율), n : 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 $NPV \geq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text{순현재가치}(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3 (내부수익률(IRR, $NPV = 0$ 되는 할인율)) : $IRR \geq 12\%$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text{내부수익율}(IRR)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4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중요변수(예: 공사비, 차량운행비용, 교통수요, 할인율 등)가 일정량 변화^{*시} 경제성 분석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 추정치의 오차 보완 차원

* 민감도 분석의 변화율 예시(도로공사): 공사비 : 10%단위로 $\pm 20\%$ 까지, 차량운행비용 : 5% 단위로 $\pm 10\%$ 까지, 교통수요 증감 : $\pm 10\%$, 할인율 : 1% 단위로 $\pm 5\%$ 까지 임

- (재무성 분석) 해당 사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 경우 financial analysis를 통해 타당성 조사 이후 민자유치를 포함하는 사업시행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
 - 동 분석시 적용되는 비용은 실제 투입되는 현금(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 편익은 요금수입등 현금수입(경제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됨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투자과 더불어 민자유치를 고려하는 사업의 경우 financial analysis를 수행하여 사업시행 전략 수립에 활용

* <참고> **대형 ODA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목적) 사업 초기단계에 대형 프로젝트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대상사업) 일정규모 이상 사업(예시: 무상 100억원, 유상 1억불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 (추진방법) 주관기관(재정부, 외교부)이 우선순위 등을 기재한 '예비타당성 목록'을 대상으로 총리실과 협의하여 추진
 - * 실제 조사는 대외경제정책과 지역연구능력을 갖춘 전문연구기관(KIEP)이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중립적으로 실시하되, 총리실은 과정을 관리·감독

IV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검토 사례 (필리핀 남북부연결 철도 2차사업, '09. 12)

구 분		검 토 내 용
1. 기술적 타당성	a. 사업범위	- 알라방역으로부터 칼람바역까지 총 연장 27km 구간의 철로보수 및 복선화 등 토목공사, 철도차량 구매, 컨설팅 서비스 등
	b. 추정사업비	- 직접공사비(85.4백만 달러)는 주요 단위공사비와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컨설팅 서비스 비용(3.6백만 달러)은 과업기간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비를 추정하였는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c. 사업실시기간	- 사업부문별 공기 등을 감안할 때 48개월의 사업실시기간은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됨 - 철도변 거주민의 이주는 주택청(NH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차 사업의 경우 9월말 현재 총 21,514 가구중 13,118 가구가 이주하여 61%가 완료되었고, 사업개시전에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2. 재무적 타당성		- 순현재가치(NPV) -66,228천 달러, 내부수익률(IRR) -0.11%로 각각 추정되어 재무적 타당성 낮음
3. 경제적 타당성		- 순현재가치(NPV) 21,118천 달러, 편익비용비율(Benefit Cost Ratio: B/C) 1.21,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 17.82%로 각각 추정되어 경제성 여부의 판단기준인 $NPV > 0$, $B/C > 1$, $EIRR > 12\%$ 를 충족하는 바,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4. 기대 효과	a. 차주국	- 남부마닐라 및 인근 라구나 지역주민에 대한 통근철도 서비스 제공 - 메트로마닐라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b. 대한민국	- 필리핀 철도사업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및 후속 연계사업 선점기회 확보 - 필리핀 인프라 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진출 기반 강화
	c. 외교/경제협력	- 수원국의 우선순위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EDCF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우방국인 필리핀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5. 차주국 동향 및 대외지급 능력	a. 정치/경제	-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수차례 탄핵시도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대선까지 현 정권의 지속이 전망됨 -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 증대, 정부의 투자 확대,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으로 비교적 건설한 성장 시현 예상
	b. 대외지급능력	-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06년 51.6%→'07년 41.4%→'08년 36.3%)하는 등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은 낮음.

□ 프로젝트 심사시 주요 검토사항 : EDCF 지원적격국 여부, 수원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 환경 등

구 분		지 원 기 준	본 건	부합
1.	차 주	차주국 중앙정부, 중앙은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필리핀 정부(철도청)	부 합
2.	지 원 대 상 국	경협기금운용지침상 I ~ V 그룹 국가 (87개국)	필리핀(III 그룹)	부 합
3.	지 원 대 상 사 업	경협기금운용지침상 중점지원사업 또는 일반사업	중점지원사업(우선지원사업 : 교통)	부 합
4.	차 관 종 류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등	개발사업차관	부 합
5.	차 관 한 도	총사업비의 100% 이내(현지화비용지원)	73.9%(차관한도의 34.1%)	부 합
6.	a. 이 자 율	III 그룹 연 0.10% 이상	연 0.1%	부 합
	b. 원 금 상 환 기 간	40년(거치기간 10년) 이내	40년(거치기간 10년)	부 합
	c. 원 금 상 환 방 법	연 2회 정기분할상환	좌 동	부 합
	d. 이 자 징 수 방 법	매 6개월마다 후취	좌 동	부 합
	e. 연 체 이 자 율	정상이자율에 2.0%를 가산	좌 동	부 합
	f. 취 급 수 수 료	차관지출금액의 0.1%	좌 동	부 합
	g. 담 보	차주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일 경우에는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징구	필리핀 재무부(정부)의 지급보증서 징구	부 합
	h. 차 관 표 시 통 화	원 화	좌 동	부 합
7.	a. 구 매 적 격 국	외화비용 : 대한민국 현지화비용 : 차주국	외화비용 : 대한민국 현지화비용 : 필리핀	부 합
	b. 구 매 방 법	대한민국업체간 경쟁입찰	좌 동	부 합
	c. 계 약 체 결 기 한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좌 동	부 합
8.	a. 고 용 적 격 국	대한민국	좌 동	부 합
	b. 고 용 방 법	대한민국업체간 제한경쟁입찰	좌 동	부 합
	c. 계 약 체 결 기 한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좌 동	부 합
9.	자금지출방식	신용장방식, 사후지급방식 또는 직접지급방식	신용장방식 또는 직접지급방식	부 합
10.	a. 타 이 드 원 조	1인당 GNI 3,855달러 이하(세계은행, '08년 기준)	1,890달러	부 합
	b. 양 허 성 수 준	최저 양허성 수준 35% 이상	79.86%	부 합
	c. 상 업 성 여 부	상업성 있는 사업 지원불가	상업성 없음('09.7.22 OECD 통보후 회원국 이의제기 없음)	부 합

1. 그간의 EDCF 문제점

- 원조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EDCF 사업규모 및 품질 추진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수원국내 가시성있는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지원성과 부족, 보증·출자 등 지원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원조의 질에 대한 평가도 부진하며 EDCF 대표상품 부족
 - ▣ 타 공여국과 차별화되는 EDCF 전략목표와 사업관리, 추진체계 효과성 제고 필요

2. 향후 추진방향

① EDCF 사업의 대형화·다양화 추진

- (대형화) 협조융자, PPP 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13년까지 발전, 공항, 항만등 5억불 이상의 대형인프라 사업 성사 추진

* 밤콩교량사업(베트남, ADB 협조융자)이 2.9억불로 최대 규모 / **'11년까지 도로, 송전 등 인프라사업 평균이 약 4.7천만불

- (다양화) 보건·의료 등 우리측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섹터차관* 도입, 보증제도 도입 준비등 EDCF 사업의 스펙트럼 다양화 추진
 - * 개도국의 종합개발계획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섹터별(예: 보건·의료)로 예산지원 등으로 일괄지원하는 방식
- 英 DFID의 CDC(모태펀드) 모델을 벤치마킹,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개발펀드* 출연 허용방안 연구
 - * 예: 개도국 PPP 사업준비/국제 PPP 펀드, 아프리카 인프라펀드 등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①출자, ②융자사업 허용, 출연사업 규정不在
-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EDCF 보증제도 도입 검토 (12년 상반기중 연구용역 실시)

2] EDCF 사업의 품질·편의성 제고

- (유·무상 연계) 유·무상 역할 강화 측면에서 '15년까지 중저소득국(1~4천불)에 대한 EDCF 신규사업 비중을 확대(예: 40%이상), 對최빈국 사업규모는 축소(예: 20%이내)
- (Untied 확대) 국제사회 권고등을 감안 순수 비구속성 사업 추진 확대
 - 최빈국 및 고채무국에 대해 '15년까지 모든 EDCF 신규 승인사업의 비구속화 (현재 20% 수준)
 - 저소득국, 일부 중저소득국에 대해 차관 양허수준(CL)이 80% 이상 유지되도록 지원조건 탄력 적용

- (원조 예측성 제고) 수원국의 중기재원조달 계획 마련에 기여하도록 기본협정*(F/A)체결을 '12년 15개국까지 확대 (* ODA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의 지원한도·조건을 규정, 필리핀 등 10개국 발효 중)

③ 對개도국 글로벌협력 강화

- (對개도국 파트너십 확대) 원활한 EDCF 사업실행(승인, 집행)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EDCF 정책협의를時 당해연도 집행실적 목표를 공동 설정(procurement arrangement)하여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 부여
 - . EDCF 집행 부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수원국의 행정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KSP 지원
 -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EDCF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투자환경(제도·규제 등)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 . 이를 위해 민간부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보증기능* 지원 협의
- * (예) 개도국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설립 재원을 EDCF로 지원하여 개도국 정부의 보증기능 확대 지원(개도국 정부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 상승)
- (對선진공여국 협력 강화) 일본(JICA), 프랑스(AFD), 독일(KfW) 등과 정례협의체 확대, 공동사업 발굴 추진

- (글로벌 협력) G20, 부산총회(HLF-4)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민간참여, 지식공유,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EDCF의 성과를 강화
 - 민관 협력, 남남협력(지식공유) 등 국제개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EDCF, KSP 성공사례 홍보
 - Post HLF-4 체제인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참여방안 협의

4] 추진체계 효율화

- (EDCF 사업일정 체계화) 매 4분기 EDCF 중기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미션을 실시하고, EDCF 정책협의를 매 1분기(1~2월 집중) 실시하여 사업심사·승인 일정을 조기에 수립
 - ‘12년중 일부 중점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후, ‘13년부터 EDCF 정책협의 실시 국가 모두에 시행
- (사업기간 준수·단축) 차관 지원비를 활용하여 EDCF 사업이 부진하나 주재원이 없는 수원국을 중심으로 ‘상주컨설턴트’ 제도를 운영
 - 원거리 사업(아프리카 등), EDCF 사업 최초 실시지역(중점협력 제외국) 등에 차관지원비(무상)로 우선적으로 파견
- (수은 EDCF 조직) EDCF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섹터(ICT, 도로, 상하수도 등) 전문조직과 지역 전문가가 Matrix 형태로 협력하여 사업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